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의 보호기간의 상한을 마련하지 아니한 것이 피보호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며, 해당 외국인의 보호 개시 또는 보호기간 연장 시 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중립적인 기관에 의한 통제절차를 마련하고 당사자인 외국인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 보장이 필요하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2023. 3. 23. 선고 2020헌가1, 2021헌가10(병합)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마련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이송명령 절차 및 그 밖에 개정 법률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함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조제1항제6호”를 “법 제4조제1항제7호”로 한다.

제58조제1항 중 “법 제51조제1항”을 “법 제51조제1항 또는 영 제78조제1항·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영 제65조”를 “영 제65조 또는 제78조제7항·제10항”으로 한다.

제60조 중 “영 제65조제1항”을 “영 제65조제1항 또는 제78조제7항·제10항”으로 한다.

제5장제3절의 제목 “강제퇴거명령서의 발부”를 “강제퇴거명령서의 발부 등”으로 한다.

제5장제3절에 제63조의2부터 제63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3조의2(보호기간 연장 승인신청 시 첨부서류) 영 제78조제2항 본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소명 자료

- 가. 피보호자가 법 제6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
(법 제63조제2항 단서에 따른 보호기간 연장 승인신청의 경우에

만 해당한다)

나. 보호기간 연장이 필요한 사유

2. 송환의 가능성, 보호의 필요성, 송환국의 협조 여부, 송환 준비 경과 및 계획 등에 관한 청장·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의 검토 의견서

3. 그 밖에 보호기간 연장 승인 여부 심사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법 제66조의4에 따른 외국인보호위원회(이하 “외국인보호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정하는 서류

제63조의3(이송명령절차)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63조제4항 또는 제63조의3제2항에 따라 피보호자의 이송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이송할 피보호자(이하 이 조에서 “피보호자”라 한다)의 인적사항, 이송사유 등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적어 다음 각 호의 자에게 보내야 한다.

1. 피보호자에게 영 제78조제1항 또는 제10항에 따라 보호명령서를 발급한 청장·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

2. 피보호자를 보호하고 있는 청장·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

3. 피보호자를 이송받을 청장·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이송명령을 받은 경우 피보호자를 지체 없이 인계·인수하고,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송명령의 절차 등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제63조의4(의견서의 제출) 영 제69조제2항 전단 또는 영 제79조제4항에 따른 의견서에는 처분의 경위·이유 및 근거, 영 제69조제1항에 따른 보호에 대한 심사청구 또는 영 제79조제3항에 따른 보호 일시해제 신청의 취지와 이유에 대한 의견, 송환의 가능성·보호의 필요성·송환국의 협조 여부·송환 준비 경과 및 계획 등에 관한 의견 등을 적고 해당 증거서류나 증거물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5장제3절의2(제63조의5부터 제63조의9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절의2 외국인보호위원회

제63조의5(위원의 추천) 영 제80조의3제3항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외국인보호위원회 위원 추천서
2. 이력서
3. 법 제66조의6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63조의6(자문위원) ①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영 제80조의8제10항 및 영 제80조의14제7항에 따라 심의 사항과 관련하여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국인보호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갖춘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외국인보호위원회 또는 법 제66조의14에 따른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의 요청에 따라 심의 사항에 대하여

외국인보호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문위원의 위촉 및 자문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63조의7(피보호자의 보호장소 변경 등 통보) 청장·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 또는 신청에 대한 심사가 외국인보호위원회에 계속 중인 피보호자(이하 이 조에서 “피보호자”라 한다)의 보호장소를 변경하거나 보호를 해제(보호의 일시해제의 경우를 포함한다)한 때 또는 피보호자가 출국하거나 사망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외국인보호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영 제69조제1항에 따른 보호에 대한 심사청구
2. 영 제78조제2항 또는 제10항에 따른 보호기간 연장 승인신청
3. 영 제79조제3항에 따른 보호의 일시해제 신청

제63조의8(회의록 작성) 외국인보호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63조의9(문서관리 등) ① 외국인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문서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면 전자적 방법으로 관리할 수 있다.

1. 보호에 대한 심사청구 접수·처리대장
2. 보호기간 연장 승인신청 접수·처리대장

3. 보호 일시해제 신청 접수·처리대장

4. 그 밖에 위원장이 정하는 문서

② 외국인보호위원회는 보호기간 연장 승인신청과 청장·사무소장·출장소장·보호소장 또는 법무부장관에 대한 통보 등의 업무를 정보화망을 통한 전자적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81조제1항제2호 중 “보호한”을 “보호·재보호한”으로 한다.

별표 7 제2호조목 범칙금 부과대상자란 조목 중 “제63조제1항”을 “제63조제1항·제2항 또는 제63조의3제1항”으로 하고, 같은 호 초목 범칙금 부과대상자란 초목 중 “법 제63조제5항”을 “법 제63조의2제4항 및 제63조의3제2항”으로, “제한이나”를 “제한정기 보고, 신원보증인의 지정, 보증금의 납부 등”으로, “조건에”를 “조건을”로 한다.

별지 제34호의2서식의 제목 “통합신청서(신고서) 通合申請書(申告書)”를 “통합신청서(신고서) 統合申請書(申告書)”로 한다.

별지 제103호서식, 별지 제105호서식 및 별지 제10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6호의2서식, 별지 제116호의2서식 및 별지 제116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1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19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2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20호의2서식 부터 별지 제120호의9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

이 신설한다.

별지 제138호의2서식 뒤쪽 신청인 가목 중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을
“본인”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번호 :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성별 남 [] 여 []	국적
	대한민국 내 주소	
피보호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남 [] 여 []	국적
	대한민국 내 주소	

위 사람이 「출입국관리법」 제55조에 따라 년 월 일에 제기한 심사청구에 대해 아래와 같이 결정한다.

주문	
사실 및 이유	
적용 법조	
비고	

년 월 일

외국인보호위원회 (인)

보호기간 연장 승인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	-----	------

1. 피보호자 인적사항 등

성명		성별	
생년월일		국적	
대한민국내 주소			
체류기간 만료일			
보호명령서 발급기관		보호장소	
보호 시작일		보호기간 만료일	
보호 경위			

2. 신청내용 등

연장기간	부터	까지
연장사유	[] 출국거부	[] 여권 미소지
	[] 개인고충(임금체불 등)	[] 난민인정 절차
	[] 행정소송 절차	[] 민사·가사소송 절차
송환 가능성	별지로 작성	
보호 필요성	별지로 작성	
송환국의 협조 여부, 송환 준비 경과 및 계획	별지로 작성	
참고사항		

「출입국관리법」 제63조제2항, 제63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제2항·제10항에 따라 보호기간 연장 승인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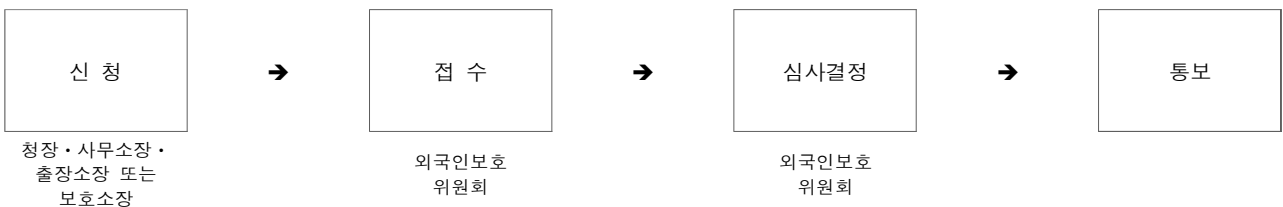
년 월 일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 직인

외국인보호위원회 귀중

첨부 서류	1. 피보호자가 법 제6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한 소명자료(법 제63조 제2항 단서에 따른 보호기간 연장 승인신청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보호기간 연장이 필요한 사유에 대한 소명자료 3. 청장·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의 검토의견서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번호 :

보호 일시해제 신청에 대한 결정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성별 남 [] 여 []	국적
	대한민국 내 주소	
피보호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남 [] 여 []	국적
	대한민국 내 주소	

위 사람이 「출입국관리법」 제65조에 따라 년 월 일에 제출한 보호 일시해제 신청에 대해 아래와 같이 결정한다.

주문	
사실 및 이유	
적용 법조	
비고	

년 월 일

외국인보호위원회 (인)

번호(No.) :

보호 일시해제 취소서 (REVOCATION OF TEMPORARY RELEASE FROM DETENTION)

수신 :

To :

용의자 (Person subject to Revocation)	성명 (Full name)	
	생년월일 (Date of Birth)	성별 (Gender) []남 Male []여 Female
	국적 (Nationality)	직업 (Occupation)
	대한민국 내 주소 (Address in Korea)	
보호일시해제 허가사항 (Permit for Temporary Release)	발부일자 (Date of Issue)	
	번호 (Reference No.)	

「출입국관리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위 사람에 대하여 허가한 보호일시해제를 아래 사유로 취소합니다.

Pursuant to Article 66(1) of the Immigration Act, the Permit for Temporary Release granted to the abovementioned person has been revoked for the reason stated below.

취소사유 및 보호장소 (Reason for revocation and Place of Detention)	취소사유 (Reason for revocation)	
	보호장소 (Place of Detention)	

년 월 일
 Date (year) (month) (day)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

직인

CHIEF, ○○IMMIGRATION OFFICE

의견진술 기회 고지 확인서 (CONFIRMATION OF NOTICE OF OPPORTUNITY TO MAKE A STATEMENT)

귀하는 「출입국관리법」 제66조의3에 따라, 귀하에 대한 보호, 보호기간 연장, 보호 일시해제의 취소 전에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In accordance with Article 66-3 of the Immigration Act, you may make a statement to the Chief of the Immigration Office prior to the decision on detention, extension of detention period or revocation of temporary release from detention.

본인은 위와 같은 내용을 안내받았음을 확인합니다.

I hereby confirm that I have been informed of the details stated above.

	년	월	일	
	(Year)	(Month)	(Day)	
확인자				(서명 또는 인)
Confirmed by				Signature/Seal

위 사람에게 의견진술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고지했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거부함

Though informed of the opportunity to make a statement, he/she refuses to sign or seal without a legitimate reason

※ 서명 또는 기명날인 거부 사유 :

※ The reason for the refusal of sign or seal :

	년	월	일	
	(Year)	(Month)	(Day)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 출입국관리공무원				(서명 또는 인)
○○IMMIGRATION OFFICE Immigration Officer				Signature/Seal

의 견 서 (STATEMENT)

의견제출인 (Person Submitting the Statement)	성명 (Full name)
	생년월일 (Date of Birth)
	성별 (Gender) 남 Male[] 여 Female[]
	국적 (Nationality)
	대한민국 내 주소 (Address in Korea)
의견제출 내용 (Statement Details)	
비고 (Remarks)	

본인은 본인에 대한 [] 보호 / [] 보호기간 연장 / [] 보호 일시해제의 취소 여부에 대해 위와 같이 의견을 진술합니다.

I make a statement as above regarding the [] Detention Order / [] Extension of Detention Period / [] Revocation of Temporary Release from Detention.

년 월 일
 (Year) (Month) (Day)
 (서명 또는 인)
 Signature/Seal

의견제출인
 Submitted by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

TO: the CHIEF of ○○ IMMIGRATION OFFICE(BRANCH OFFICE)

귀하

유의사항 (Notice)

1. 기재할 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거나 별도의 서면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If there is insufficient space for the statement, a separate sheet may be used.
2. 참고자료 등을 첨부하거나 별도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Reference or supporting documents may be attached or submitted separately.

외국인보호위원회 위원 추천서

연 번	성 명	생년월일	현 소속 및 직위(직책)	추천자격 (법 제66조의6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출입국관리법」 제66조의6제1항에 따라 외국인보호위원회 위원을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의 장 직인

법무부장관 귀하

이 력 서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집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현 소속(기관 및 부서)		직위(직책)
	주소		전자우편주소

학력 등	학교명	전공	학위 (최종학위 수여일 기재)
	논문, 저술, 수상경력 등		

경력	기간	소속	직위(직책)	기타

외국인보호 등 관련 분야 활동내용	
-----------------------------	--

년 월 일

위원 후보자

(서명 또는 인)

법 무 부 장 관 귀하

첨부서류	「출입국관리법」 제66조의6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보호에 대한 심사청구 접수·처리대장

접수		청구인				피보호자							처분청	심사·결정		비고
번호	월일	성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	성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	보호장소	보호 시작일	보호기간 만료일		월일	내용	

보호기간 연장 승인신청 접수·처리대장

접수		신청기관	피보호자							연장사유	심사·결정		비고
번호	월일		성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	보호장소	보호 시작일	보호기간 만료일		월일	내용	

보호 일시해제 신청 접수·처리대장

접수		청구인				피보호자										처분청	신청사유	심사·결정		비고
번호	월일	성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	성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	보호장소	보호시작일	보호기간만료일	보호일시해제시작일	보호일시해제기간만료일	월일			내용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의2(출국금지 대상자) ① <u>법 제4조제1항제6호</u>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p> <p>1. ~ 13. (생략)</p> <p>② (생략)</p> <p>제58조(보호명령서등 발부대장) ① 청장·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u>법 제51조제1항</u>에 따라 보호명령서를 발부하는 때에는 보호명령서 발부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p> <p>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때에는 보호명령서 발부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p> <p>1. <u>영 제65조</u>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기간을 연장한 때</p> <p>2. ~ 4. (생략)</p> <p>③ (생략)</p> <p>제60조(보호사항변경통지서의 송부) 출입국관리공무원은 <u>법 제5</u></p>	<p>제6조의2(출국금지 대상자) ① <u>법 제4조제1항제7호</u>-----</p> <p>-----</p> <p>-----</p> <p>-----</p> <p>-----</p> <p>1. ~ 13.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58조(보호명령서등 발부대장) ①-----</p> <p>----- <u>법 제51조제1항</u></p> <p><u>또는 영 제78조제1항·제10항</u>-----</p> <p>-----</p> <p>-----</p> <p>②-----</p> <p>-----</p> <p>-----</p> <p>-----</p> <p>-----</p> <p>1. <u>영 제65조 또는 제78조제7항</u></p> <p><u>· 제10항</u>-----</p> <p>2. ~ 4.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제60조(보호사항변경통지서의 송부) -----</p>

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통지를 한 후 보호장소를 변경하거나 영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법 제54조에 규정된 자에게 보호사항 변경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3절 강제퇴거명령서의 발부

<신 설>

-- 영 제65조제1항 또는 제78조 제7항·제10항-----

-----.

제3절 강제퇴거명령서의 발부등

제63조의2(보호기간 연장 승인신청 시 첨부서류) 영 제78조제2항 본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소명 자료

가. 피보호자가 법 제6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법 제63조제2항 단서에 따른 보호기간 연장 승인신청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나. 보호기간 연장이 필요한 사유

2. 송환의 가능성, 보호의 필요성, 송환국의 협조 여부, 송환

<신 설>

준비 경과 및 계획 등에 관한
청장·사무소장·출장소장 또
는 보호소장의 검토의견서

3. 그 밖에 보호기간 연장 승인
여부 심사결정을 위하여 필요
한 서류로서 법 제66조의4에
따른 외국인보호위원회(이하
“외국인보호위원회”라 한다)
의 위원장이 정하는 서류

제63조의3(이송명령절차) ① 법무
부장은 법 제63조제4항 또는
제63조의3제2항에 따라 피보호
자의 이송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이송할 피보호자(이하 이 조에
서 “피보호자”라 한다)의 인적
사항, 이송사유 등을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에 적어 다음
각 호의 자에게 보내야 한다.

1. 피보호자에게 영 제78조제1
항 또는 제10항에 따라 보호
명령서를 발급한 청장·사무
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
장

2. 피보호자를 보호하고 있는
청장·사무소장·출장소장 또
는 보호소장

<신 설>

3. 피보호자를 이송받을 청장 · 사무소장 · 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이송명령을 받은 경우 피보호자를 지체 없이 인계 · 인수하고,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송명령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제63조의4(의견서의 제출) 영 제69조제2항 전단 또는 영 제79조제4항에 따른 의견서에는 처분의 경위 · 이유 및 근거, 영 제69조제1항에 따른 보호에 대한 심사청구 또는 영 제79조제3항에 따른 보호 일시해제 신청의 취지와 이유에 대한 의견, 송환의 가능성 · 보호의 필요성 · 송환국의 협조 여부 · 송환 준비 경과 및 계획 등에 관한 의견 등을 적고 해당 증거서류나 증거물을 첨부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제3절의2 외국인보호위원회

제63조의5(위원의 추천) 영 제80

조의3제3항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외국인보호위원회 위원 추천서
2. 이력서
3. 법 제66조의6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63조의6(자문위원) ① 외국인보

호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영 제80조의8 제10항 및 영 제80조의14제7항에 따라 심의 사항과 관련하여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국인보호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갖춘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외국인보호위원회 또는 법 제66조의14에 따른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의 요청에 따라 심의 사항에 대하여 외국인보호위원

<신 설>

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문위원의 위촉 및 자문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63조의7(피보호자의 보호장소 변경 등 통보) 청장·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 또는 신청에 대한 심사가 외국인보호위원회에 계속 중인 피보호자(이하 이 조에서 “피보호자”라 한다)의 보호장소를 변경하거나 보호를 해제(보호의 일시해제의 경우를 포함한다)한 때 또는 피보호자가 출국하거나 사망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외국인보호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영 제69조제1항에 따른 보호에 대한 심사청구

2. 영 제78조제2항 또는 제10항에 따른 보호기간 연장 승인

<신 설>

<신 설>

신청

3. 영 제79조제3항에 따른 보호
의 일시해제 신청

제63조의8(회의록 작성) 외국인보
호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
다)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
야 한다.

제63조의9(문서관리 등) ① 외국
인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문서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
한 경우가 아니면 전자적 방법
으로 관리할 수 있다.

1. 보호에 대한 심사청구 접수
· 처리대장

2. 보호기간 연장 승인신청 접
수· 처리대장

3. 보호 일시해제 신청 접수·
처리대장

4. 그 밖에 위원장이 정하는 문
서

② 외국인보호위원회는 보호기
간 연장 승인신청과 청장·사무
소장·출장소장·보호소장 또
는 법무부장관에 대한 통보 등
의 업무를 정보화망을 통한 전

제81조(각종보고) ①청장·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부적인 보고기준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1. (생략)
2. 외국인을 보호한 때, 보호기간을 연장하거나 보호장소를 변경한 때 또는 보호의 일시 해제를 취소한 때
3. (생략)

자적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81조(각종보고) ①-----

1. (현행과 같음)
2. ----- 보호·재보호한 -----

3. (현행과 같음)